

제43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14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6)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1)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1)
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2)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8)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89)
1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3)
11.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3)
1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5)
1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3)
1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0)
16.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2)
17.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6)
18.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9)
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0)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4)
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4)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9)
2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6)
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상정된 안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3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3
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3
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6) 3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1) 3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1) 3
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2) 3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8) 3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89) 3
1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3) 3
11.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3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3) 3
1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5) 4
1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3) 4
1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0) 4
16.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2) 4
17.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6) 4

18.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9)	4
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0)	4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4)	4
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4)	4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9)	4
2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6)	4
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4

(10시12분 개의)

○소위원장 김의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된 김의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개정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7)
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0)
4.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6)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1)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1)
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2)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8)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89)
1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3)
11.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7)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213)

1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5)
1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3)
1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0)
16.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2)
17.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6)
18.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9)
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0)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4)
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14)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09)
2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6)
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24)

(10시14분)

○소위원장 김의겸 의사일정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차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두희 국방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상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의사일정 1항과 제2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2건의 법률안은 성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시행일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에 맞춰 10월 2일로 규정하였고 적용례를 두어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였는데 8월 31일 제1소위 논의 과정에서 그 ‘수사 중’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1항 제2호의 90일 이내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의 요구가 된 사건도 수사 중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명

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페이지·5페이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를 정의하는 규정에 가지번호로 신설된 조문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조문 정리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 소위에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 사경이 의율하는 범죄 죄명에 따라서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스토킹범죄 같은 경우에도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율할 경우에는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7대 범죄에 대해서만 전건송치를 인정할 경우에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많은 민생범죄의 피해자가 제외되는 점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은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의무 조항을 신설할지 여부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특성, 피해자 보호 실효성 제고,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이 부분 지난번 전건송치 사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주당에서 준비한 게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건송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건송치를 하더라도 여전히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일부 죄명에 대해서만 전건송치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다 억울한 것인지 이 7개 범죄피해자들만 억울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더 의견 주실 분 없으신가요?

○김태규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법원 의견은 없네요, 그렇지요? 입법정책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도밖에 안 들려서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양형 기준도 법원이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김태규 위원** 그리고 형사사법 정책에서 법원의 역할은 굉장히 큰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7대 범죄 이외의 추가적인 범죄를 포함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모호한 말로 피해 가고 구체적인 의견이 없으면 법원이 형사사법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위원님 지난번에도 여러 아픈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의 범위를 넘는 수사 영역에서의 권한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법원이 특별하게 의견을 가진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입법부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히 판단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태규 위원** 소추는요? 소추 주체가 누구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소추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김태규 위원** 검찰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김태규 위원** 수사의 주체는? 지금 현재 수사권이 없어진 상태를 고려하면 수사의 주체는 누구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입니다.

○**김태규 위원** 수사기관, 경찰하고 검찰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거기 소추하지 말라라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법원이 따라가 가지고 지금 재판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재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 부분은 현재 재판부에서 판단……

○**김태규 위원** 그런 것은 검찰 잘 따라가면서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그렇게 받을 빠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검찰에 따라간다는 표현에 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위원님들 의견 주신 걸로 하고요.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한 번 논의를 하셨고요.

2쪽입니다.

첫 번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 차관을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군사법원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사건의 이첩·이송이 빈번해진 상황에서 국방부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국방부차관의 협의회 위원 추가에 따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가 형사사법 처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개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일을 약간 여유 있게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차관이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되더라도 협의회 연속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특별히 두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공포 후 1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군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근 완료되었지만 완전 전자화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다음은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도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다음, 국방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정성호 의원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예기간이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포함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유예기간 1년으로만 하면 국방부가 다 준비될 수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지금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개정안에는 3개월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이것을 1년으로 늘리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은 없나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기관 의견이어 가지고요. 1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1년으로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매듭을 짓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그리고 부칙 2조에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경과조치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서 저희는 삭제 의견인데요. 기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2조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소위원장 김의겸 여기도 이견 없으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매듭을 짓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자료를 봐 주시겠습니다.

공소청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당초 공소청법 부칙 개정안으로 61건이 있었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7개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고요. 다른 위원회로 3개의 법률이 갔기 때문에 지금 공소청법 부칙으로는 51개의 법률만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소청법 부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8월 31일 날 한 번 소위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2개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의원 발의로 개별 발의된 법률안부터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공소청법 부칙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검사징계법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청법에 따라서 명칭들을 변경하면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이 들어가 있고요. 검사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징계 종류에 파면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각주 1번에 공소청법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공소청법에 개정할 때 넣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징계에 파면을 추가했고요.

5조입니다. 5조 김기표 의원안은 현행 징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원발의안의 기초는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TF에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때 부처 간 협의로 이렇게 조정된 내용을 담아서 부칙 개정안이나 김기표 의원안에 같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6조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 위원의 간사가 검찰국 검찰과장인데 부서의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법무부의 검사 인사·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렇게 풀어서 넣어 고요. 7조 같은 경우는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공소청이라 말할 때는 대검찰청에 대응한 게 공소청이고요, 그 밖에 필요하면 광역 공소청, 지방 공소청, 지청 이렇게 풀어 써야지 용어가 정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정비사항이고요. 부칙에는 아까 말한 대로 징계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요. 징계 위원 임기가 변경됐기 때문에 현재 계신 위원들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부칙을 두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이성운 의원 대표발의하셨고요. 제10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마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안건들이 여러 개인데 이게 내용들이 다 서로 너무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토론을 조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 7개를 다 같이 논의하고 하면 너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내용상으로도 조금 혼동스럽고요. 그래서 우리 안건 하나, 검사징계법 하면 이것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그다음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소위원장 김의겸**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그러면 7건을 분리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법무부부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법무부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 위원님.

○**곽규택 위원** 검사징계법이 이번에 형소법 부칙에 하는 내용하고 자동적으로 공소청명칭 바꾸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거든요. 먼저 징계위원의 임기를 보면 원래 3년으로 돼 있던 것을 1년으로 하고 1년씩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차관님, 지금 검사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위원도 법무부장관이 임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임기는 사실 길어도 1년 정도예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법적으로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원래 검사징계법에 징계위원을 3년으로 했던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의 입맛에 맞는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임기보다는 충분히 길게 3년으로 해 놔 가지고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오더라도 기존의 징계위원들이 휘둘

리지 않게 하려는 뜻도 저는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번 공소청·중수청하고 징계위원의 임기를 바꾸는 것과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꾸려는 이유는 전혀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검사의 징계로 파면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소청법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청법 자체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사의 징계에 파면이 추가된다는 내용도 사실 개별적으로는 언급이 잘 안 됐었지요, 토론도 안 됐었고.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검사를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사실 탄핵 없이 그냥 법무부장관이 결정해 가지고 검사 한 명 파면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공소청법에 징계로 파면이 추가됐다 해 가지고 이렇게 검사징계법에 자동적으로 파면을 추가해야 된다, 이것은 논의는 조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소청법 자체에 검사의 징계에 파면을 추가했다는 것, 당시에 거기다가 다 밀어 넣은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 징계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차관님, 의견 있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검사 징계에 파면이 도입되게 된 것은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서 더더욱 본인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도 중대한 비위가 있을 경우 파면이 가능한데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그와 같은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파면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서, 즉 검사에 대한 징계 부분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중대 비위가 있는 경우에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파면이 들어가게 된 배경입니다.

다음으로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장기간이기 때문에 위원 구성이 장기간 고착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임기와 연임 규정을 개정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행님, 그러면 왜 법관은 파면하고 해임을 놔둬니까? 그런 논리면 법관은 더 청렴성이 요구되지 않을까요? 자기 책임성도 더 요구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책임성이 강해서 파면을 넣었다면서요. 그러면 법관도 파면·해임을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에 대한……

○김태규 위원 ‘헌법에 있으니까’ 그 얘기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니요, 신분에 대한 안정을 보장하는 것과 비위가 있었을 때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은 함께 고려해서 균형점을 찾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왔었지요. 그리고 비록 보완수사요구권밖에 못 가지는 초라한 조직이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전혀 없어지지 않는 걸 겁니다. 그러면 그만한 신분보

장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로지 한쪽만 생각하면서,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성만 주장하면서 파면을 마음대로 끌어들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내가 왜 검찰을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의문인데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생경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박 위원님.

○박형수 위원 제가 하려던 얘기를 김태규 위원님이 대신 해 주셨는데 저도 한말씀 더 보태게요.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전에 검사이지 않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형해화시키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되는 것인지 판단을 못 합니까?

방금 얘기를 했지만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 이외에는…… 신분보장을 하는 헌법상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 취지를 존중해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에도 종전에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바꾸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에 찬성한다라고, 아무 이견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법관이 그만큼 존중받는 것처럼…… 존중받는다라는 게 특별히 그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인해서 결국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이유로 종전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법을 개정해 놔 가지고 지금 검찰은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니까,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훨씬 더 준사법적인 성격이 강해졌어요. 그러면 준사법기관의 성격이 더 강해진 공소청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더 더욱 요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징계법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하는 것이다, 법무부 의견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어떻게 이 법률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의겸 의견은 충분히 전달……

○박형수 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 규정이…… 그러면 종전에 법무부장관 임기가 3년, 4년이었을까요? 검찰총장 임기 3년, 4년이었어요? 그때 2년이었어요.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 징계위원을 3년으로 해 놓은 이유는 장관이 바뀌고 총장이 바뀌는 그런 외풍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입법자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3년에서 1년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따져 보지도 않고 별 이견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편의성 때문에? 이 제도를 왜 이렇게 규정했는지를 근본적으로 깊이 성찰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간략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하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찰 사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고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 위반이 됐을 경우에 파면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조직의 구성원이건 고위공직자이건 예컨대 중대한 비위, 금품수수라든지 성비위라든지 아주 중대한 비위가 있었을 때 지금은 해임밖에 징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거기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파면이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온 것이지 감사의 신분보장을 약화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약화되지 이게 왜 약화 안 됩니까? 이게 약화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못 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다면 일반 공무원들은 중비위를 저질렀을 때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더 높고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가 더 중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임만으로 징계가 가능하다고 하는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에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잠깐만. 법관이 그렇게 고도의, 지금보다 더 정치적 중립성,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법관은 안 하는 이유가 단순히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헌법을 왜 그렇게 규정해 놨는지 생각 안 해요? 지금 논리대로라면 법관에 대해서도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파면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에요?

○**박균택 위원** 그것은 헌법 바꿀 때 그렇게 해야지요.

○**김용민 위원** 헌법도 바꿔야지요.

○**박형수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헌법의 취지를 보자는 거예요. 헌법의 취지가 독립성과 중립성보다도 더 엄격한 청렴성 요구 때문에 파면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면 그 헌법 잘못된 거예요. 왜 법관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박균택 위원** 40년 전이니까 시대 상황이 그랬던 거지요.

○**박형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꾸자는 얘기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김태규 위원** 지금은 더 필요하지. 지금 이 독재국가에서 더 필요하지.

○**박균택 위원** 그렇지 않지요. 이제 정상화해야지요.

○**박형수 위원** 잠깐만, 우리끼리 얘기할 것은 없고, 내가 지금 차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런데 끼어들지 맙시다.

○**김용민 위원** 워낙 질의 잘하셔 가지고……

○**박형수 위원** 비아냥거릴 거예요?

○**김태규 위원** 보니까 오늘 빈정도가 높네. 컨디션 좋으신가 봐.

○**박형수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와 관련된 문제예요.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렇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왜 김건희 조사 때 출장조사 하고 유죄 증거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덮어 주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안 하다가 이미 공소청법 개정해서 파면이 들어간 이후에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심심하면 레퍼토리가 거기로 흘러가네.

○김동아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시라면서.

○김태규 위원 하세요.

○김동아 위원 끼어들지 마시라면서 왜 끼어드세요?

○김태규 위원 하시라고.

○김동아 위원 왜 끼어드냐고, 대답을 하세요.

○박형수 위원 아까 내가 얘기할 때 끼어들더만.

○김동아 위원 저는 안 끼어들었어요.

○박형수 위원 동료끼어들더만.

○김동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목 잡기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형사소송법이랑 공소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한정해서 빠르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의 징계와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 헌법에서 중요한 가치이지요. 하지만 국민주권 아래에 있는 가치이고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사법부 독립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직전,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판사 사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징계사유 중에 판사 사찰이 들어가 있지요? 몰라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검사가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오늘 밤에 누구랑 술 마셨는지, 평소에 농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인지 그런 것 조사하고 있으면 사찰 아닙니까? 그것이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요. 그 얘기를 지금 왜 못 하세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을 윤석열이 해 왔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당시에 그것을 옹호해 왔어요. 옹호해 왔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중요한 가치 얘기할 때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법안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1소위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의겸 꺾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너무 번지고 이야기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온 24건의 안건들은 여야 합의하에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돼 있는 거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개진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다음 안건으로……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합의한 것만 처리하자고. 합의한 것만 처리해.

○곽규택 위원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것은 안 되지.

○소위원장 김의겸 꺾 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 자료 6페이지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보시면 이성운 의원이 대표발의하셨고요. 현행 제10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성운 의원안에는 삭제가 되어 있는데요.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 10조는 61년 이 법이 제정할 당시부터 있었던 조항이고요. 검사의 수사개시 등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 형사소송법의 맥락에 따르면 삭제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마치셨나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소위원장 김의겸 그러면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보고 부분은 변화된 체계에 맞춰서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0조 전체를 삭제할 경우에 상습적·조직적 폭력행위 등 중대범죄의 수사 방지·은폐에 대한 경찰 외부적 통제 약화가 우려되고 부적격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징계·교체 요구 등 근거가 소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부분 외에는 유지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유지하자는 것이지요?

○김동아 위원 차관님, 10조 1항을 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다음부터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분만 빼면 된다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이런 후단 부분은 그대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꺾 위원님.

○곽규택 위원 이것은 지금 경찰청에서 ‘삭제 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10조 자체가 원래 수사지휘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조항이에요. 폭처법이라고 하는 게 1961년도에 생길 때 사실 이것 예전에 우리나라에 횡행하던 조폭, 정치 깡패 이런 것 때려잡으려고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깡패들의 특성상 지역 경찰과의 유착이 항상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하자는 취지에서 10조가 들어간 것이지 이게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이것하고는, 폭처법에 있는 이 규정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처럼 이것은 이번에 형소법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하는 게 맞고 명칭만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우리가 그동안 검사장에 의한 사법경찰관 교체나 징계·해임 요구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사건 암장을 할 가능성 혹은 부실수사 이런 것들인데 사실 폭처법 위반행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암장 자체가 쉽지 않은 성격을 갖는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게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했던 조항으로 저도 보이고요. 특히 여기 보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이런 것 판단하는 게 정말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는데 이런 사유로 다른 기관이, 지금 대등한 기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공소청장이 경찰을 징계, 해임 또는 교체 요구를 하는 것을 폭처법에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법의 취지나 전체적인 법의 정신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삭제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박형수 위원 이것 또 한마디해야 되겠네요. 뭘 이렇게 매번 의견이 다르나.

○소위원장 김의겸 박은정 위원님이 먼저 손 들어 주셔서……

○박은정 위원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보완수사 요구 규정에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 시정조치 등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그 규정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고 이 규정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수사지휘를 전제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문의 의미가, 게을리하거나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 자체가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이 조항은 수사지휘권 조항과 관련 없는 조항입니다. 관련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미 수사지휘권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리고 협력 관계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조항은 계속 유지가 돼 왔어요. 왜 유지가 되어 왔느냐? 원래 이게 입법 취지가 아까 광규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유지가 돼 왔던 거예요.

이게 지금 암장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암장일 가능성이 가장 큼니다. 조직폭력배가 폭력을 행사했는데 피해자가 있다고 그것 다 신고합니까? 못 합니다. 그게 조직폭력의 가장 큰 폐해예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또 그 조직폭력배와 경찰이 유착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얘기하는 게 경찰권력이 엄청 커졌어요. 수사권력 자체가 몽땅 다 지금 경찰로 갔어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다 그렇게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경찰을 통제할 방안이에요. 이런 제도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내서 법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이 경찰 통제 제도를 없애겠다고요? 법률을 단순히 어떤

한 주장의 정합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이 왜 제정됐는지,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권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와 감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까 보고라는 표현이 수사지휘를 전제로 한 것 같아서 삭제하자는 의견이었는데 그 보고라는 표현이 꼭 수사지휘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하 간 대등한 관계에서 보고라는 표현을 안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행정기관에다가, 행정부에다가 요청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런 말 잘 쓰고 싶지 않은데 ‘국회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이런 말 쓰잖아요. 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이나 행정각부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대등한 기관 간에도 보고라는 말 또는 완화시켜서 통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이 보고라는 말을 그대로 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대로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굳이 이것을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바꿀 필요 없다. 꼭 반드시 지휘권이 전제되어야지 보고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지금 크게 세 가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자 또 하나는 삭제를 하자 그리고 절충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고 의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이것만 들어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자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 안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의견이 나온 것으로 하고 다음 세 번째 안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김의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이고요. 소위자료 8페이지입니다.

지금 특사정을 어떻게 정할지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9페이지 조문대비표 보시면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용어만 바꾸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법무부.

○**법무부차관 이진수** 용어 변경이므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법원행정처도 마찬가지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법무사법 개정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자료 12페이지입니다.

김동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요.

기준에 검찰청 직원이었던 검찰사무직렬, 마약수사직렬이 향후 형사법무직렬로 바뀌어 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무사법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법무사의 업무에 법원과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 들어가 있는데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그 지청을 포함한다고 해서 명확히 그 업무 범위를 적시했구요.

밑에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 현재, 검찰 직원에 대한 일부 시험 면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형사법무직렬로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맥락에서 용어 정비하고 있고요. 부칙의 특례 규정에 보면 시험 일부 면제와 관련해서 좀 전에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경력 그리고 검찰청 직원이 중수청 직원으로 특채가 될 텐데요. 그분들이 중수청으로 가서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돼서 근무한 경력도 포함해서 특례를 주자는 내용까지 부칙에 있습니다.

12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법무사협회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2조와 같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게 되면 업무 범위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다가 중수청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아 위원** 중수청 추가가 맞는 것 같은데요.

○**곽규택 위원**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낸 의견도 있네요.

○**소위원장 김의겸**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다음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공수처 말씀해 주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이 부분은 종전에 검찰사무직렬이나 마약수사직렬 근무경력 및 검찰사무직렬, 마약수사직렬로 근무하다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법무사법과 집행관법의 경력에 합산하도록 공소청법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수처 수사관이 빠져 있습니다. 수사·공소유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수처 수사관을 형집행·공소유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동일한 수사업무 종사자 경력임에도 자격 취득상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각 항에 검찰사무직렬, 마약수사직렬로 근무하다가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합산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수처 수사관 전부에 대해서 자격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검찰이나 마약 등 검찰청 직원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경우에 동일한 자격을 부과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곽 위원님.

○**곽규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법무사협회에서 낸 의견도 일응 합리적인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실무를 잘 모르겠는 게 그렇다고 하면 사실 수사업무는 경찰에서만

다 하는데 경찰에 내는 고소장 이런 것 작성도 당연히 법무사가 하는 업무 같은데 그게 또 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었네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무사협회에서 낸 의견은 중대범죄수사청만 추가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제는 고소장·고발장 접수 자체를 경찰에서만 받을 거니까 이런 부분도 법무사협회에다가 의견을 좀 더 확인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아 위원** 2조 1항 각 호에 있는데요.

○**소위원장 김의겸** 김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김동아 위원** 2조 1항 각호에 법무사의 업무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소청으로 바꾸는데 광규택 위원님 말씀은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3호나 8호에 경찰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는가요?

○**광규택 위원** 아, 3호나 8호가 있네.

○**박형수 위원** 뒤에 3호, 8호 생략되어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잠깐 보고드리면 이것은 변호사협회에서는 또 약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전문 직역 간에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이미 대법원에서 형사고소장 작성이 법무사 업무 범위라고 판단을 해 놓았기 때문에 법에 없어서 넣더라도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3호에서 8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형수 위원** 3호에서 8호에 경찰 고소장 접수가 없어요?

○**김동아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경찰은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업무를?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로 아마 인정이 된 것 같고요.

○**광규택 위원** 대법원 판례를 좀 법에 반영해 주면 더 명쾌할 것 같은데……

○**김동아 위원** 이건 변호사 업계도 한번 들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 문제이긴 합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다음, 형법 개정안.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형법 개정안 소위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이렇게 4개의 조문 안에 지금 검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124조와 125조, 126조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초점을 줘서 위당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검찰’ 대신 ‘검사직무’로 용어를 바꾸고 있고요. 128조 선거방해죄는 공무원의 행위를, 그러니까 소속기관이 중요한 부분을 고려해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이렇게 기관명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법무부나 법원행정처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용어만 바꾸는 거니까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다음, 형집행법 개정안.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 자료 18페이지입니다.

형집행법하고 형사절차 전자화법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관서’에서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고요.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관 협의 대상에 검찰 대신 공소청, 중수청 추가하고 있고요. 밑에도 중수청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조 1항 보시면 미결수용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검찰청 대신 공소청 들어갔고요. 공소청은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 부분 명확히 넣어 줬습니다.

다음 1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공소청, 중수청 들어가는 부분.

이상 조문 정리고요.

21페이지, 형사사법 전자화 촉진법에서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광역, 지방·지청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고 필요한 곳에 중수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문 정리고요.

지금 형사사법 전자화 촉진법 같은 경우에는 부칙 22페이지에 보시면 중대범죄수사청 경우에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특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칙에 특례를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기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기관 의견.

○**법무부차관 이진수** 형사절차 전자화법 관련해서 국방부 추가에 관해서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기간 문제는 법원행정처도 1년?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특별한 없는 것 같으니 다음 공소청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 자료 23페이지입니다.

김승원 의원이 대표하신 공소청법 부칙 개정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부칙 개정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용어를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그리고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 등 기관명이나 직책명을 바꾸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처럼 검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나 조사 이런 내용을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공소제기나 공소 이런 관련 용어로 바꾸고 있고 형사사법공조법 같은 경우는 검사의 지휘 이런 부분이 적정하지 않아서 사경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관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23페이지 하단에서는 지방선거 특검법, 개별 특검법에, 밑에 보면 김건희특검법, 윤석열특검법, 종합특검법 등이 다 여기 부칙에 들어와 있는데 용어를 정비하는 수준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 발의 법안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이 선관위특검법도 단순한 용어 정비 수준에서 넣을지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의원님이 대표로 다시 의원발의 하신다면 지금 형소법 부칙 개정안에는 넣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우선 선관위특검법 이걸 지금 개별 발의하기로 야당도 동의를 하신 거지요?

○박형수 위원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지, 우리한테 왜 물어봐요, 그거를.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

○소위원장 김의겸 알겠습니다. 그건 개별 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건 없으시면 소위 자료 3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앞에는 단순한 용어 정비였고요.

지금 검찰청수사관 신분 관련 정비 부칙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 직원들이 형사법무 직렬로 바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어 정비이고 직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행일을 10월 2일로 정리할 것이고요. 노동감독관 법은 시행일이 12월 8일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시행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법률로 발의된 우리 위원회 소관, 타법 위원회 소관을 하면 총 10개인데요 그 부분은 부칙 개정안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7페이지, 38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법무부부터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공소청법 부칙 개정안 가운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 중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불송치사건에 대해서도 송부받아 검토 중이고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처럼 개정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그중에 법무부장관의 공소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청법 50조였나요, 그거에 지금 완전히 지금 삭제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무부 의견은 없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요. 7항, 8항 논의 후에 보고드릴지 아니면 지금 보고드릴지 말씀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그러면 7항, 8항 한 뒤에 마지막으로……

○법무부차관 이진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위원장님, 저희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들으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지금 보고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법무부에서 준비한 설명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의겸 예, 배포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공소청 직원 보직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공소청 본문에 법무부장관 보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수청에 임용되는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2일 출범일에 맞춘 검사와 공소청 직원 인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청법 40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직을 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공소청 직원의 경우에는 현행 검찰청법 50조에 해당하는 법무부장관의 보직 규정이 제정법률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공소청 직원의 인사·보직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별도 수권규정이 없어서 이러면 공무원임용령이 적용되게 되는데 공무원임용령상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보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까지 전속될 경우에 민주적 통제 장치가 취약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외청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 부합하고 이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공소청 직원에 대한 인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공소청법상 법무부장관의 보직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으므로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시부터 법무부장관의 형사법무직 인사 근거에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배부해 드린 법률안과 같이 공소청법 제55조의2에 공소청 직원의 보직 규정을 두어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법원행정처 의견 안 들었네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문제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박형수 위원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신중하게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종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의 인사권 또 검찰청 직원의 인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검찰총장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는 방향 아니냐 이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회적인 어떤 큰 명제 이런 것과 상관없이 검찰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뭔가를 막 결정하는 이런 우려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그게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 문제 그것과 인사권, 예산까지도 포함한 이런 문제들이 같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다 검찰에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사권까지도 다 주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탄생시키는 거다 이런 논의들이 조심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어요, 검찰에서. 수사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법무부장관이 계속해서 검사 인사도 하고 검찰 직원에 대한 인사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법원은 대법원장이 인사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인사를 다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아닌가 이런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법무부장관의 보직 인사권 이것은 종전에 검찰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최소한의 어떤 통제 장치로서의 기능을 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다면 이 통제 장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정권 또는 특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가 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당장은 이것이 어느 쪽이 현실상 우리가 채택해야 될 올바른 어떤 방향인지 판단이 정확하게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직원의 인사까지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는가. 어쨌든 지금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률로 법무부장관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앞으로 법률 개정 사항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직원에 대한 인사권까지도 지금 당장 법무부장관한테 주는 문제는 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고요.

차관님, 이게 아마도 검찰청법에 있는 규정인데 이번에 공소청법 만들 때 이게 검토가 되다가 여기 빠진 게 왜냐하면 시행령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가 됐던 것이거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시행령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이. 그래서 법에도 넣겠다는 건데 그러면 일단 위임한 부분은 부령에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일부를?

○법무부차관 이진수 공무원임용령이라고 하는 것이 공소청법…… 임용령에 해석규정이……

○박은정 위원 공무원임용령이 해석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몇 급 이상인가…… 1항이,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게 사무관, 5급 이상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5급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법무부장관이 하는 걸로 이렇게…… 이 규정은 지금 공소청법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검토가 됐던 규정이고 시행령에 없다면 넣는 것이 맞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이 공무원 임용령의 여러 해석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이해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박규택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 자료 봐 주시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저희가 형소법 부칙 개정안에 담겼던 총 69개의 법률 중에 개별 법률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12개, 타 위원회 소관으로 16개가 발의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발의된 12개 심사부터 하신 다음에 형소법 부칙 개정안의 심사에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철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져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자료 6페이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기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이 고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들에 관련된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함에 따라 기존의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을 준용하던 공수처검사에게 수사권들을 주는 내용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보완수사요구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에는 그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각주 2번에 보시면 개정 형사소송법 논의할 때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수사처검사와 공소청검사 간의 보완수사요구 절차, 구속 절차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형소법에 규정하기보다는 개별법에 규정하자고 하셔서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김한규 의원안에 있었던 법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 법률에 따라서 개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법제 원리상 맞습니다. 그리고 법제적 측면에서는 형소법의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법제의 경제성 원리에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소청검사의 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내용이 들어간다면 부칙에 적용레도 명확히 해서 어느 사건부터 이것을 적용할지 적용레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조심사하시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김기표 의원안에서는 고위공직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수청수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검사가 3급 상당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패방지법에 있는 고위공직자도 같은 수준으로 용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거목에 중수청 관련 수사관이 들어가면서 거목도 직접 공수처에 공소권이 있는 범죄로 들어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사처검사에 대해서 현행 조문 보시면, 8조 4항입니다.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수사처수사관에 대해서는 단서에 보시면 TO 정원이 40명인데 다만 검찰 수사관으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 정원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중수청이 수사기관으로 갔기 때문에 경찰과 달리 불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정원 부분의 단서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의원안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12조, 17조 같은 경우는 공수처 처장이 기관 협조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하는 내용들이 12조, 17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14페이지, 수사처검사의 수사권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수사처검사에게 수사권을 어떻게 부여할지를 구체적으로 조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수사처검사의 수사에 관해서는 형소법 제2편 제1장 수사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조문 198조 등 쪽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는 옆의 표에 보시면 관련된 조문 내용을 적시해서 보도록 되어 있고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추가된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의무라든지 피의자진술 녹음 의무라든지 모든 수사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개정 조문까지 들어가 있고요. 형소법 제245조의13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피해자 면담 조항입니다. 이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의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16페이지는 형소법 관련 조문을 적용하면서 달리 읽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적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공수처검사에게는 법원에다가 직접 영장청구라든지 정보통신서비스 보전기간 연장이라든지 감정유치청구, 감정처분 허가장 이런 거는 공소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하단의 4항에 보시면 형소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성폭법에 따른 위장수사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수사권을 부여한 개별 법률들이 있기에 그 법률도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넣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3조의3(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입니다.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10일 원칙입니다. 10일 원칙이고 수사권만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공소청, 서울중앙지방법공소청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며 석방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2항 같은 경우는 공소권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플러스 10, 10 연장하는 조문은 23조의5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속기간 산입에 대해서는 형소법 관련 규정을 가져오고 있고요. 구속기간 연장은 공소권이 있는 경우에만 10 플러스 10, 20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사권만 있는 경우에는 10일만 하고 연장이 안 됩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수사처검사가 수사를 마친 다음에 공소청검사에게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규정이 현행에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경우 공소청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 관해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관련 조문에 대해서 형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경과 다르기 때문에 직무배제나 징계요구 할 수 없고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보내라는 그런 요구도 할 수 없도록 197조의2제2항부터 6항까지만 준용을 하였습니다.

니다.

그다음에 제26조의2는 지금 현재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수사처검사와 군검사 간의 사건 송부입니다. 군검사 같은 경우는 보완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부분은 필요 없어서 이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7조의2, 형소법의 관련 조문 중에 공판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재판 중에 구속영장 집행을 하게 될 때 수사처검사는 직접 수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가 제외된 부분, 137조, 138조, 312조는 조서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부분도 그대로 가져와서 검사와 검사 부분이 삭제된 형소법 공판 관련 규정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29조, 재정신청에 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형소법과 맞게 조문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쪽 조문 정리 부분입니다.

다른 법률의 준용입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이런 부분을 준용하도록 포괄적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공소청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소청법 제4조 5호 및 6호는 제외했습니다. 여기는 국가소송이나 형집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처검사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에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고요. 형소법 그리고 군검사에 관한 부분도 직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군사법원도 넣었습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10월 2일로 공통으로 했고요. 필요한 부분, 개정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은 6개월로 유예를 하였고 전자적 수사 관리라든가 압수수색영장의 영상녹화 의무, 피의자 진술의 녹음 의무는 1년 유예했기 때문에 27년 8월 5일, 27년 2월 5일 6월, 1년 기간 계산을 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추어서 신설된 각종 의무조항에 대한 적용례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적용례 사항은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적용례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를 어떻게 하실지에 따라서 이 적용례 부분은 연동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우선 법무부부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당초 형소법 부칙 일괄개정 형식으로 논의되었던 내용을 별도 법률로 발의한 것입니다. 공수처 송부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구속사건에서 신병의 인치와 검사 구속기간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등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인데 일부 보완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215조의2항에 따른 보전기간 연장 및 보전신청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가 아닌 보전 대상 전자정보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보전기간 연장 및 정보통신서비스 보전신청’이라는 용어를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및 전자정보 보전신청’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 자료 17쪽의 비교란에 기재된 바와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용어 정리인 것 같네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공수처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요지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수청장 및 3급 이상 중수청수사관을 수사 대상으로 신설하는 안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의 범위를 총경과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수처 의견입니다.

그다음으로 공수처검사의 구속기간에 관한 안23조의3제1항과 관련하여 공수처검사에 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인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공수처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관할 구치소에 신병을 구금하여 인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개념을 활용하심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공소청검사의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신설 관련입니다. 공소청검사의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소청검사와 군검사는 공수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없도록 하고 공수처검사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추가수사 의뢰를 받을 때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수처검사가 형소법상 검사의 지위에서 공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공소청검사의 공소유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공수처 차장님, 일단은 이 법에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들어간 것은 잘못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에 검사가, 공소청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규정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서 이것은 공수처검사, 공수처 제도에 맞지가 않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공수처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조문화하는 방법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자료가 지금 다른 분들한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내셨지요, 그 설명하는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거기에 따르면 1안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범문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2안으로 해 가지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의견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청검사가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은 공소청검사가 사건기록을 보면서 별건, 다른 범죄가 발견되는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이지요, 형사소송법상. 그런데 공수처에서 지금 제안하시는 거는 공소청에 사건을 송부했는데 공소청에서 조금 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사를 요청해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수사의 완결성을 기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 조문을 그렇게 넣으면 사실확인 규정 이것은, 사실은 사실확인 규정 자체는 필요가 없는 규정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것은 여기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닌데 이 법이 잘못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완수사요구 규정하고 사실확인 규정은 없애고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 이 부분은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관, 중수청장을 비롯해서 그 부분 넓히는 거 하고 경찰공무원 총청하고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는 부분, 이 부분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곽규택 위원** 저……

○**소위원장 김의겸** 곽 위원님.

○**곽규택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중수청의 신설 이거에 맞춰 가지고 원래는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법안도 내놨습니다, 공수처 자체를 없애는 법안. 그런데 그게 맞지요.

공수처가 처음 생긴 게 검사에 의한 수사·기소 독점 이거에 대해서 검찰을 견제하려고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무리해 가지고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런 새로운 형사법 체제가 됐으면 기존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관은 폐지하는 게 맞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수사기관을 난립시키면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봐서도 사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과거에 만들어 놓고 스스로 없애지를 못하니까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인데, 중수청을 만들었으면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차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파견 인원은 정원에서 빼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인력 보완이 됐으면 공수처도 본인들의 권한을 넓히거나 견제를 받지 않겠다 이런 식의 법 개정은 조금…… 주장하는 것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23조의5 구속기간의 연장 이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자

료 19페이지네요. 19페이지인데, ‘수사처검사의 신청의 의하여’, 이거 잘못된 표기지요. ‘신청에 의하여’가 맞는 것…… 오자인 것 같고.

이거는 23조의5라고 단독으로 둘 것이 아니고 제23조의3제3항으로 가야지요, 조문 성격상. 그래서 ‘전 2항의 경우에 연장할 경우에는 10일을 더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체계가 가는 게 맞지 23조의3의 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을 정해 놓고 다시 23조의5로 가 가지고 구속기간을 연장을 따로 두는 것은 조문체계상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공수처 차장님,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니 답변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탄생했던 배경과 현재 여전히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공수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기관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은 분리했지만 여전히 기소권에 대한 합당한 견제 그리고 검사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번에 지귀연 판사도 기소했지 않습니까? 기소했던 우여곡절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아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이유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는 공수처가 법조비리를 전담하는 수사 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를 전담하고 기소권까지 다 갖는 그런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행대로 가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아까 처장의 재정신청권 하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주라는 취지인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몇 조에 집어넣자는 얘기신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제가 조항까지는 몇 조…… 재정신청과 관련된 조항에 특례, 재정신청의 특례와 관련된 그 조항 쪽에다 넣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장의 재정신청권까지 넣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 그 부분은 여야 합의되면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수처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짧게만 말씀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안에 대해서 공수처가 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에서 국민이 바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그 후속 법안을 논의하는데 법의 근본 개정사항까지 다 들어갔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다 같이 논의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 성과나 능력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다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 우리 권한이니깐 이걸 더 넣어야 되겠다, 그런 지금 그런 말이 나오니까? 국민들께서 그게 납득하시겠어요? 공수처가 지금까지 한 그 수사 성과를 보고 권한도 더 줘야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소위원장 김의겸 박 위원님……

○박형수 위원 또 얘기가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공소청은 그건 부당하다고 얘기해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라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그걸 최소한의 장치로 지금 민주당에서 마련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소권이 없는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당연히 보완수사요구를 받아야지요. 보완수사요구를 안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청에서…… 검찰청이 아니지요, 이제 공소청이지요. 공소청에서 이거 기소 못 하겠다, 지금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소청은 직접수사 못 해, 보완수사요구도 못 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 사건을?

공수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은정 위원 수사 요청을 한다고요,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박은정 검사가…… 검사가 아니지, 참.

○박은정 위원 저는 의원입니다.

○박형수 위원 박은정 위원이 공수처 대변인이야? 왜 자꾸 대답을 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제가 짤막하게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김의겸 짧게 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수사권만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공수처 검사는 헌법상 검사의 지위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가 있고 사법경찰관의 지위로 단순히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듯이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사법경찰관 지위로 해서 그게 다 없어졌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 저희 수사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박형수 위원 독자적 영장청구권이 있고 없고 떠나서 지금 수사기관 간에 우열이 없어졌잖아요, 지휘관계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협력관계예요. 그런데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대등한 협력관계인 공수처 검사한테는 왜 보완수사요구를 못 합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타당합니까?

○소위원장 김의겸 박 위원님, 정리……

○박형수 위원 아니요, 정리가 아니고……

법무부차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소위원장 김의겸 박 위원님, 그렇게까지 이야기 번지게 하지 마시고요.

○박형수 위원 이거는 질문이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일반 형사소송법 규정과 같이 보완수사요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박형수 위원 이게 지금 다르잖아요, 기관 간에.

○소위원장 김의겸 그래서 지금 공수처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는 형소법 개정을 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비되어 있는 법안들을 정비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공수처와 검찰과의 관계라든지 공수처 수사 범위 이야기는 꽤 오랫동안 있어 왔던 숙제고, 그런데 잘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 문제까지 건드리기에는 너무 문제가 큰 것 같으니 정비하는 법안으로 일단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수처 법안은 김용민 위원님이나 또 박은정 위원님이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한번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별도의 논의를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박형수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법이 왜 급한가 하면 지난 내란수괴 사건 때 윤석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검찰청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하려고, 보완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은 이제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필요한 조문 이어서 이번 기회에 공수처법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수처가 검경하고 똑같이 보완수사요구를 여기다가 넣는 것이 맞지 않는 이유는 아까 공수처 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에 있는 검사와 공소청에 있는 검사 둘 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경에서 규정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각자의 판단이 좀 다르고 공수처는 검찰, 공소청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수사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고 그리고 수사 요청은 한 1회 정도에 한해서 하는 것이 각자 좀 더 대등하고 긴장 속에서 서로 할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공수처가 제기한 의견 중에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

○소위원장 김의겸 예, 그거로 마무리 지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공수처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에 공수처의 재정신청권 도입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신청은 기본적으로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들의 이의제기 절차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재정신청 허용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자료 30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동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 법 상설특검법에 있는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수사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게 수사권 관련 규정들을 넣어 주는 조

항이고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에게는 시스템이라든가 전자적 시스템이 관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라든가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그리고 고소인 등의 수사도 3개월 내에 마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제도도 특별검사에 맞지 않은 점, 그래서 공수처와 많은 조문 그대로 형소법 규정을 적용하지만 성질에 맞지 않은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만료할 때에는 남은 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이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파견검사 부분인데요. 지금 현행법에는 파견검사 규정이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고 해석상 검찰청 검사의 직무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소청 파견 검사는 공소유지 권한만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에서 수사기관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에 중수청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24페이지, 지금 다른 규정들을 준용하면서 특별검사의 직무 권한이 적용되어 있는데 공수처법·군사법원법, 검사나 군검사의 직무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는 못하고요. 공소유지만 담당하고요. 파견받은 공무원 등에 지휘·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고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36페이지는 공수처와 같이 관련된 형소법 수사권 관련 규정들을 열거하고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몇 개 조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도 당연히 필요 없고요.

39페이지, 구속기간은 10 플러스 10으로 구속기간을 설정했고 그다음에 41페이지, 수사기간이 끝난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상설특검 파견검사 권한 관련된 8조 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검사 수사권이 전부 삭제된 취지를 반영해서 공소유지권만 부여하고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개별특검에 대한 수사 권한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상설특검 파견검사에 대해서만 공소유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제도가 특정 사건의 독립적·집중적 수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설특검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권 폐지의 취지와 특검제도의 특수성, 상설특검과 개별특검 간의 제도적 정합성, 특검수사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이 제도가 재설계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 방지 등을 함께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법원행정처 의견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공수처법 개정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용어 수정의견이 있는 부분, 즉 심사자료 38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를 전자정보로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논의를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논의할 내용이 많고 정리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12시 반까지는 오늘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군사법원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 자료 43페이지입니다.

군사법원법,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안이고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군사법원법은 수사권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 명시되어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신설된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넣는 내용인데요, 조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122조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소재의 확인과 촉탁, 이렇게 개정 형사소송법과 같이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48페이지, 신설되는 231조의2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들어가 있는 수사·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다른 내용은 없고 특이한 것은 국방부가 구축한 형사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36조의6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피의자신문 녹음 의무 조항이 그대로 법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50페이지, 259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51쪽, 영상녹화를 할 수 없는 사유에 군사보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군사보안 등 상당한 이유’ 이 네 자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를 하면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KICS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사법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별도로 보관하도록 법문을 변경해서 넣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소청에 대한 용어 정비 들어가 있고요.

53페이지, 재정신청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군사법원의 재정신청은 형소법 부칙 개정안이나 김남희 의원안에서는 고등법원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일반법원법과 법원 체계가 약간 다른 점을 고려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칙에서는 신설되는 의무 조항에 대해서 적용례 조항 그리고 KICS 부분은 형소법 부칙에서 대령으로 시행령을 위임한 부분이 있어서 형소법과 맞춰서 법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례도 형소법 부칙에 맞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법무부부터 의견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에서는 재정신청에 관해서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한데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예,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개정안은 재정신청 관할에 관련된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관할과 군사법원법에 따른 재정신청 관할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군사법원법상 재정신청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궤를 같이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국방부 의견 어떠신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법원법 231조의2를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공감하지만 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7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군사법원법 259조의2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제수사 과정에 영상녹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에 공감하지만 예외 사유에 군사보안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군사법원법 301조 재정신청 관할 관련한 부분입니다.

재정신청 관할을 개정 형사소송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신중론이라고 그러셨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충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사법원은 민간법원과 재판권이 구분돼 있고 민간법원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에 대한 항소심 등을 심판하는 경우에 제10조(고등법원의 심판사항)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고 군사사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일관적인 판단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서울고등법원에 관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등법원에서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관할을 조정하였는데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각 지역군사법원 또는 중

양지역군사법원으로 관할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 재정신청 관할을 굳이 합의부로 옮기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고등법원에 있는 것을?

○박은정 위원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박형수 위원 뭐가 많다고요?

○소위원장 김의겸 재정신청이 많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말씀을 드리면 재정신청 사건이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사건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방법원 합의부로 내렸습니다.

○박형수 위원 법원행정처도 동의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그때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 우려도 같이 표명하고요. 또 저희가 그때 보완사항도 말씀드려서 보완사항이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여기까지 의견 나누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통비법으로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 자료 57페이지 통신비밀보호법,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에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 법에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범죄수사와 관련된 개별 수사권 조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좀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그러면 60페이지, 박지원 의원안은 당초 형소법 부칙에서는 본칙에서 검사를 삭제하면서…… 수사처검사나 특별검사들은 통신제한조치들이 여전히 필요한데 부칙에 두고 있어서 이 부분은 법률에 명확히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검사 대신 수사처검사, 특별검사, 군검사를 수사처검사 등으로 용어를 약칭하면서 검사 대신에 수사처검사 등으로 용어만 바꾸어서 현행 조문을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 수준으로 박지원 의원안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기관 의견 있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법원행정처도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인데 부칙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서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분도 검사의 청구로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위원님들.

○곽규택 위원 법무부차관님, 58페이지에 보면 법무부도 의견이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한시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필요하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낸 의견들을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에 반영한 것으로……

○곽규택 위원 반영됐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반영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곽규택 위원 반영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5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금 검찰청 검사들이 향후 3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

○곽규택 위원 경과조치 예시에 표시된 그것대로……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들어가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법무부가 의견을 넣어 주시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그 밑에는 선관위 특검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판단해 주시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예.

○소위원장 김의겸 다음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96페이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재정신청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일반검사가 수사하기도 하고 군검사가 수사하기도 하는데, 이 법은 재정신청에 대해서……

○곽규택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97페이지 조문을 보시면 이성운 의원안에서는 공소청, 그러니까 일반검사가 수사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 그런데 군사법원이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 보시면 일반검사가 수사한 불기소처분은 지방법원 합의부,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으로 법문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의 군사법원법에서 다른 재정신청과 연관된 조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기관 보고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는 아까 군사법원법 개정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법원 합의부 안으로 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고등법원이 아니라.

○소위원장 김의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건 별로 쟁점은 없을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 자료 98페이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99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대등한 협력 관계로

내용을 바꾸고 있고.

구속장소 감찰을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추어서 점검 그리고 사건송치, 검찰에 송치하는 부분을 내용을 바꿔서 ‘석방하게 하여야 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추어서 내용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기관 의견이 있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위원님들, 이것도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외국 자문사법 소위자료 101페이지에 보시면, 조문대비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 자문사가 금품 등을 받고 사건들을 알선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박균택 의원안을 보시면, 기존 현행은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대해서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으로 박균택 의원안은 정비하고 있지만 공소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문이라서 공소청 위당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공소청과 수사사건은 상호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수정의견 제시합니다. 공소청에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하고요.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으로 위당을 해서 별도 목으로 조문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이것도 명칭만 바꾸는 거니까 별다른 기관 의견 없으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위원님들도……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자료 104페이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개 법률인데 이건 성범죄와 관련된 검사와 관련된 조문의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조문대비표, 10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전담검사제가 있는데 ‘수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검사에 맞도록 공소를 하는 공소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 기존의 ‘조사’ 용어를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추어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용어가 좀 바뀌는 겁니다. 크게 검사가 빠지는 게 아니라 검사가 하는 일에 맞추어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고요.

1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기도 ‘수사’라는 부분을 빼고 검사에 맞게 ‘사건 처리’ 이

렇게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108페이지도 마찬가지로요.

109페이지도 검사가 하는 ‘조사’라는 부분의 워딩을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 이렇게 용어를 바꾸고 있고. 29페이지 수사기관에 검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빼어냅니다. 그래서 검사, 수사기관. 검사를 명시하고 있고요. 같은 부분이고, 쪽 넘어가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보셔야 될 부분은 30조입니다. 회의 자료 112페이지입니다.

제30조를 보시면 현행 19세 미만 피해자 그리고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영상 녹화를 하게 하고 그 영상 녹화에 대해서 증거 능력의 특례를 주는 조항인데요.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검사에 대해서 그대로 검사도 피해자를 면담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나 피해자를 면담할 때 영상 녹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제4항부터입니다.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만, 이거는 공판과 관련되고 증거 능력 부여는 형사소송법에서 증거 능력 부여하지 않기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영상 녹화를 하되 그 영상 녹화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문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세하게 워딩을 하는 부분이고. 성폭법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도 검사가 개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업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있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20번, 21번 같이 보고됐습니다. 이것도 크게 의견 없고. 위원님들 별 달리 의견 없으시면 다음, 22번 아동학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이거는 쪽 다섯 개 법률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아, 그런 거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24번, 형소법 개정안.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자료 135페이지입니다.

형소법 부칙 개정안, 지금 개별 법률들을 다 일괄해서 보셨고요. 형소법 부칙 개정안으로 넘어 오시면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이라든지 사법경찰 관련 정비를 하는 내용인데 선원법처럼 검사의 수사권이 들어가 있는 부분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경미한 자구 수정들이 있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8페이지,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보면 검찰총장이 소추하기 위해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증권 관련 범죄는 중수청 관할이기 때문에 중수청장이 수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제공할 수 있고 여전히 검찰총장도 소추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료감호법 보시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할 때 관련 현행 조문 5조를 보시면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고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안 형소법 부칙 개정안

은 여전히 검사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는 부분은 바뀌야 될 것 같아서 수정의견 제시했습니다. 검사는 사경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조사하도록 법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송치 후 검사의 사건 처리와 관련된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용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말씀드리면 147페이지의 변호사법 같은 경우에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워딩을 정비한다든가 ‘(연고 관계 등을 이용한 선전금지)’, 검사는 수사업무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소·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료 참조하시고요.

156페이지, 피해자 관련 조항.

앞에서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조항처럼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58페이지, 출입국관리법 보시겠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서 출국금지 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서영교 의원안 형소법 부칙에서는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행대로 두고 있어서 정확히 워딩을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을 해서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검사의 권한을 살리면서 지금의 업무 내용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 그대로 조문 정리 차원입니다.

다음, 부칙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형소법 부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행일은 10월 2일로 맞추고요. 다음, 시행일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6개월이나 1년 유예된 것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정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정 형사소송법에 자구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167페이지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245조의12, 고소인등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건인데 3항 및 4항으로 인용 조문을 바꾸는 게 체계 적합성에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칙에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인지 사건이라든가 송치 사건에 대해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를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나누어 봤습니다. 인지 사건에 대한 계속 수사는 공소청법 부칙에, 송치 사건에 대한 계속 수사는 형소법 부칙에 나누어 놓다 보니 해석상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소법 부칙, 이미 공포되었습니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송치받았거나 인지 받아서 계속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 형소법 부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기관 의견 있으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관련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이 개정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행정처는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는 걸로……

○곽규택 위원 잠깐만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것 중에 135페이지 보시면 선원법·근로기준법 이런 것에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해당 법이 아니라 이거는 형소법 부칙으로 해서 개정한다는 의미인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원래 우리가 그렇게 다 부칙에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상임위별로 따로 나눠 가지고 법안 수정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거는 검사의 수사권 삭제하는 것 외에도 더 실질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모양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소위자료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 소관 12개로 발의된 법률은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셨고요. 타 위원회 1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음영 표시된 겁니다. 행안위의 공직선거법, 국방위원회 군사기밀 보호법,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복지 노인복지법, 정무위…… 이렇게 음영 표시된 16개의 법률이 개별안으로 발의되었지만 이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거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검사의 직무에 맞게 사실관계 확인한 면담으로 용어를 정비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오늘 위원님들 여러 의견 주셨는데 지금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한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대략 언제 속개한다는 말씀…… 오늘요?

○소위원장 김의겸 바로.

○김한규 위원 바로요?

○소위원장 김의겸 예.

○박형수 위원 바로? 밥 안 먹고 바로?

○소위원장 김의겸 이야기 좀 하세요.

○김한규 위원 간사님들끼리 협의하신다는 건가요?

○소위원장 김의겸 예. 얘기를 좀 나눠야 하지 않겠어요?

○박형수 위원 아직 한 권이 더 남았지요?

○소위원장 김의겸 다 끝났습니다.

○김한규 위원 부록은 아까 타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것 참고로……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부록에 있는 건 경미 수정이라서 특별히 보고드리지는 않았습
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한 10분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의겸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의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의 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면서 기관 쪽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9월 16일 오전 10시에 다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기우중 차장님, 이재승 차장님, 이두희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곽규택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태규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형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국방부

차관 이두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중